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national medical center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education & training center for public healthcare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본 자료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참여 시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과 매년 배포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목차

## 1. 장학생 신청

### 신청 자격

1.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14
2. 현재 대학 4학년인데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14
3. 장학생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 14
4. 재학 중 학교 사정으로 간호학과가 없어졌는데 제 학번까지는 정상적으로  
간호학과 졸업 처리 및 면허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14

### 제출 서류

5. 전적대학을 졸업/자퇴 후 현재 대학에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 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전적대학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성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15
6. 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학위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 편입했는데, 성적증명서는 학점은행제  
성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졸업한 대학교 성적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15
7. 장학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성적증명서는 선발 이후 장학생 자격유지나  
의무복무지 배치 등에도 반영이 되나요? ..... 15
8. 기재하는 성적은 직전 한 학기 성적 평균만 기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전 학기 까지의 성적 평균을 기재하는 건가요? ..... 16
9.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진, 표 등을 삽입해도 되나요? ..... 16
10. 신청서류 중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하나요? ..... 16
11. 신청서류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PDF가 아닌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하나요? ..... 16

제출  
서류

- 12.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에 붙이는 증명사진의 별도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 16
- 13. 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만 지원 가능한가요? ..... 17
- 14. 장학생 지원서에 기재하는 주소는 현재 거주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표 기준인가요? ..... 17
- 15. '친구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되어 장학생 지원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했는데,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7
- 16. 장학생 지원서 등의 제출서류를 사도와 복지부로 제출할 때 우편을 통해 제출하나요? ..... 17

## 2. 장학생 선발

- 17. 지역별로 장학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배정되어 있나요? ..... 18
- 18.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선발 경쟁률을 알 수 있을까요? ..... 18
- 19. 장학생 선발은 연 1회만 하나요? ..... 18
- 20.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환산 하나요? ..... 18
- 21. 면접 복장은 정해져 있나요? ..... 19
- 22. 면접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 19
- 23.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중도 포기 할 수 있나요? ..... 19

## 3. 장학금

### 지원 목적

- 24. 장학금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
- 25. 장학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 20

### 지급 시기/방법

- 26. 이미 이번 학기 학비를 납부한 상황인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은 다음학기부터 받는건가요? ..... 21
- 27. 장학금은 졸업할 때 까지 지원 받는건가요? ..... 21
- 28. 장학금은 학교로 지급되나요 개인에게 지급되나요? ..... 21
- 29. 학비 납부 기간이 되었는데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2
- 30. 장학금 수혜 중에 장학금 신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22
- 31. 편입생이라서 현재 학적은 4학년이지만 실제 교과이수과정은 3학년이기 때문에 졸업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2년 동안 모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22
- 32. 장학금을 1년만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의무복무도 1년만 하면 되나요? ..... 22
- 33. 학점 부족으로 인해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더 등록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23
- 34. 다른 장학금을 받고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장학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3
- 35.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3

정지/중단  
/반환

- 36. 장학금 수혜 중 휴학을 해도 장학금은 계속 지급 되나요? ..... 25
- 37. 재학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장학금이 계속 지급 되나요? ..... 25
- 38. 장학금을 받는 중에 전과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도 장학금 수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 25
- 39. 졸업 후 면허 시험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 26
- 40.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더해지는 법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26

기타

- 41. 장학금을 지원 받는 시도를 중도에 변경할 수 있나요? ..... 27
- 42.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휴학/복학/전과/편입 등 학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27

## 4. 의무복무

기관  
정보

- 43. 공중보건의로로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과 공중보건장학생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28
- 44. 의무복무하게 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 28
- 45. 의무복무 시작 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28

## 4. 의무복무

### 기관 정보

- 46.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에 대한 정보(정원, 연봉, 직원 복지, 신규자 교육 등)를 알 수 있을까요?..... 29
- 47. 의무복부 기간 동안 보수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 29
- 48. 의무복무 할 기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나요? ..... 29

### 복무 기간

- 49.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30
- 50.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30
- 51.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미루거나 잠시 중단할 수 없나요? ..... 30
- 52. 의무복무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31
- 53. 의무복무 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 31

### 배치

- 54. 졸업 후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으로 배치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2
- 55. 학교가 소재한 지역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요?..... 33
- 56. 의무복무 할 기관의 근무부서를 장학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33
- 57. 의무복무 중 개인/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배치가 변경될 수 있나요? ..... 33
- 58. 오지나 도서산간지역 내 위치하는 곳으로 의무복무지가 배치될 수도 있나요? 33



유예/  
철회

59. 펠로우 수련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 34
60. 임신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 35
61.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발생했는데,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는  
1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 35
62. 병역의무로 의무복무 유예중인 장학생이 11월에 제대를 합니다.  
사업 지침상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날 부터 바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채용 및 신규직원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 시작일을  
조정 할 수 있을까요? ..... 35
63.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 졸업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졸업유예’를 하고  
학교를 더 다니면서 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 36
64. 졸업예정자가 전문의 수련을 사유로 조건이행 유예 신청을 했는데  
전공의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유예가 유효한가요? ..... 36
65. 의무복무 기관에서 인턴 수련과 의무복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는 없나요? ... 36
66. 면허취득 후 부득이하게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장학금과 법정이지만  
반납하면 되나요? ..... 36

## 5. 경력·취업

- 67. 의무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 37
- 68. 의무복무 기관에서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게 되나요? ..... 37
- 69.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에도 원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37
- 70.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해당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시험이나 면접 등  
채용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 37
- 71. 의무복무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정원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나요?..... 38
- 72. 의무복무 기간 중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 38

## 6. 교육 및 멘토링

- 73. 공중보건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 39
- 74.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졸업하여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중이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42
- 75. 멘토링은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요? ..... 42
- 76. 멘토링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42
- 77.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되는 멘토는 누구인가요? ..... 42

78. 멘토링 진행 중 상대 멘토/멘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	43
79. 멘토링으로 매칭된 학생이 개인사정상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해도 되나요? .....	43
80.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 인정이 되나요? .....	43
81. 교육과 멘토링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	43
82. 교육이나 멘토링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	44
83. 교육이나 멘토링 당일이 아닌 하루 전일에 출발하는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	44
84. 교육 참석 시 식사나 숙소가 제공되나요? .....	44

## 7. 지역 구분

85. 장학금 지원 지역, 의무복무 지역 등 이 사업에서 말하는 ‘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45
86. 가산점 부여 기준 ‘복무희망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와 관련, 부산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소재 대학교를 나온 경우는 해당이 되는건가요? .....	45
87. 의무복무 희망지원 지역이 ‘경북’인데, 혹시 대구의료원으로도 배치될 수 있나요? .....	45

# 목차

## 8. 기타

- 88. 특례법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의하나요? ..... 46
- 89.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도의 증서가 수여되나요? ..... 46
- 90. 재학중 또는 의무복무 중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겸업을 할 수  
있나요? ..... 46

## 부록

- 부록 1. 사업 주체별 역할 및 문의처 ..... 48
- 부록 2.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목록 ..... 50



자주  
묻는  
질문

Q&A

# 1 장학생 신청



## 신청자격

### Q 1.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과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재학생이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Q 2. 현재 대학 4학년인데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시 학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4학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시까지 1학기 또는 2학기만 장학금을 지원 받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기간인 2년이 적용됩니다.

### Q 3. 장학생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 Q 4. 재학 중 학교 사정으로 간호학과가 없어졌는데 제 학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간호학과 졸업 처리 및 면허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간호학과 졸업으로 인정이 되고 면허 취득도 가능하다면 장학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Q 5. 전적대학을 졸업/자퇴 후 현재 대학에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전적대학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성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재학중인 학교 기준으로 재학생/편입생/신입생을 구분하며, 전적대학교 졸업/자퇴 후 올해 입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 바랍니다.

**\* 성적증명서 제출 기준**

- 재학생 : 대학교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편입생 :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9쪽,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

- Q 6. 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학위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 편입했는데, 성적증명서는 학점은행제 성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졸업한 대학교 성적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이번 학기 편입생으로 입학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편입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와의 공정성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전공(의학 또는 간호학)이 아닌 이전 대학(다른 전공) 기준의 성적을 제출 바랍니다.

- Q 7. 장학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성적증명서는 선발 이후 장학생 자격유지나 의무복무지 배치 등에도 반영이 되나요?**

성적증명서는 장학생 선발 시 학업능력 평가 근거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제1항

**Q 8. 지원서에 기재하는 성적은 직전 한 학기 성적 평균만 기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균을 기재하는 건가요?**

직전 한 학기 성적의 평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9.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진, 표 등을 삽입해도 되나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관련 사진이나 표 등을 삽입하실 수 있으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글자수에 맞춰 해당 내용을 충분히 포함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10. 신청서류 중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하나요?**

장학생 신청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까지만 표기되어도 무관하며, 장학생 선발 이후 장학금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입해야 합니다.

**Q 11. 신청서류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PDF가 아닌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하나요?**

도장이나 서명을 별도의 그림파일로 만들어서 한글파일에 붙여넣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평가 과정의 편의를 위함임으로 부득이하게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별도 붙이임은 없습니다.

**Q 12.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에 붙이는 증명사진의 별도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3cm X 4cm 규격의 반명함 사진으로 준비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13. 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만 지원 가능한가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졸업 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도에서 신규 장학생을 모집하는지 선발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Q 14. 장학생 지원서에 기재하는 주소는 현재 거주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표 기준인가요?**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 바랍니다.

**Q 15. '친구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되어 장학생 지원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했는데,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선발 계획, 공고 내용, 홍보물 등을 안내합니다. 혹시 공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 연락 주시면 관련 자료 송부 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Q 16. 장학생 지원서 등의 제출서류를 시도와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때 우편을 통해 제출하나요?**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장학생 신청 관련 서류 일체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바랍니다.

## 2 장학생 선발

### Q 17. 지역별로 장학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배정되어 있나요?

매 연말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별 신규 장학생 수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른 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 조사 실시 후 다음 년도 최종 모집 정원을 결정합니다. 다만,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학과별 지원자 현황에 따라서 최종 정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18.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간호대학생 선발 경쟁률을 알 수 있을까요?

지역별 간호대학생 선발 경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23년까지는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모집하였으므로 지역별 모집 정원이 사전에 공고되지 않았음을 참고 바랍니다.

〈공중보건장학생(간호대학생) 지역별 선발 경쟁률〉

구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년	11:1	2.7:1	21:1	2.3:1	5:1	1.8:1	9:1	-	5:1	3.5:1
2024년	8.7:1	-	12:1	4.1:1	3.7:1	4.8:1	-	5.4:1	3.1:1	3.5:1

### Q 19. 장학생 선발은 연 1회만 하나요?

정규 선발은 연 1회입니다. 단, 당해 연도 모집 및 선발 현황에 따라 하반기에 일부 정원에 대한 추가 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20.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환산 하나요?

고등학교 3학년(1, 2학기) 주요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의 석차등급/백분율/평어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각 시·도별로 세부 산출기준을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산출기준에 따른 가이드 준수

**Q 21. 면접 복장은 정해져 있나요?**

면접 복장은 별도 정해진 바 없으며, 단정한 차림으로 참석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22. 면접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여 운임비(단, 철도, 선박, 항공, 버스에 한하며 자가용 승용차 이용은 제외함)를 지원하며, 결제 영수증 및 좌석표를 제출하시면 실비 지급 해 드립니다.

\* 지원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Q 23.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중도 포기 할 수 있나요?**

본인의 개인사정 및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생(장학금) 포기신청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장학생이 장학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장학금 반환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따라 포기 처리되며,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포기 승인 후 그 동안 지원 받은 장학금과 법정 이자를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면허 취득 이후 포기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3 장학금



#### 지원 목적

#### Q 24. 장학금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 받으면,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최소 2년~최대 5년) 의무적으로 공중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조건의 이행)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지원조건 및 금액

#### Q 25. 장학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장학금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제2항



## 지급 시기/방법

### Q 26. 이미 이번 학기 학비를 납부한 상황인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은 다음 학기부터 받는건가요?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 된 학기부터 지급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 Q 27. 장학금은 졸업할 때 까지 지원 받나요?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할 때 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기 단위로 일부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제2항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 Q 28. 장학금은 학교로 지급되나요 개인에게 지급되나요?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도에서 장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32쪽, 〈별지 제6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지급 신청서

### Q 29. 학비 납부 기간이 되었는데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학비 납부 기간 이전에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장학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각 시도에서 장학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시도의 예산 확보 시기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3쪽, <별지 제1-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 3. 공중보건장학금의 지급 시기

### Q 30. 장학금 수혜 중에 장학금 신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장학금 신청 기간 변경을 원할 경우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기간 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이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 Q 31. 편입생이라서 현재 학적은 4학년이지만 실제 교과이수과정은 3학년이기 때문에 졸업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2년 동안 모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편입에 따른 부득이한 추가 학기 등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학년은 4학년, 희망지원기간은 4학기로 기재하시고 희망지원기간 하단에 참고사항으로서 '편입생 2학기 추가 등록 필요' 를 추가 기재 바랍니다.

### Q 32. 장학금을 1년만 받고 싶는데 그러면 의무복무도 1년만 하면 되나요?

현행법상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1년만 지원 받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은 2년입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조건의 이행)제1항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의무복무

**Q 33. 학점 부족으로 인해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더 등록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유예 및 해당 학기·학년 교육과정 재이수에 따른 유급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9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재학 중 관리 - 1) 학사 관리

**Q 34.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장학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장학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무복무 전제 장학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중복지원

**Q 35.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중보건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판단에 따라 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반환 및 대출금 상환 등 중복 수혜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보전은 불가하오니 장학생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지/중단/반환



### 잠깐!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볼까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Q 36. 장학금 수혜 중 휴학을 해도 장학금이 계속 지급 되나요?**

휴학, 정학, 유급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제1항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Q 37. 재학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장학금이 계속 지급 되나요?**

교환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고 졸업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38. 장학금을 받는 중에 전과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도 장학금 수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전과는 면허 취득 및 의무복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존에 지원 받은 장학금과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동일한 전공으로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제2항제3호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 Q 39. 졸업 후 면허 시험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제1항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 Q 40.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더해지는 법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 5%를 적용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제379조(법정이율)



## 기타

### Q 41. 장학금을 지원 받는 시도를 중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처음 신청한 시도에서 졸업할 때 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해당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의무복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42.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휴학/복학/전과/편입 등 학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통보해야 하나요?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도에서는 매 학기 종료 후 장학생의 다음 학기의 학적을 조사하여 ‘학사관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하며(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장학생의 경우에도 졸업 전까지 학사관리 보고서 제출 필요), 조사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등을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9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재학 중 관리 - 1) 학사 관리

## 4 의무복무



### 기관정보

#### Q 43. 공중보건의로로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과 공중보건장학생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중보건의를 공중보건 의사제도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군대에 가는 대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생과 의전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입니다.

#### Q 44. 의무복무하게 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4항

**참고** <부록 2>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목록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홈페이지 [rhs.mohw.go.kr](https://rhs.mohw.go.kr)

#### Q 45. 의무복무 시작 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의무복무 기관에서의 근무 시 필요한 서류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46.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에 대한 정보(정원, 연봉, 직원 복지, 신입직원 교육 등)를 알 수 있을까요?**

의무복무 기관에 대한 정보는 사전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47. 의무복부 기간 동안 보수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의무복무 기간 동안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보수 기준에 따르며, 다른 신규 직원과 보수 지급 체계를 동등하게 적용받습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Q 48. 의무복무 할 기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나요?**

해당 기관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용 인원 제한 등의 사유로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 복무 기간

### Q 49.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실시하며, 범위는 최소 2년~최대 5년입니다.

지원 학기	1~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9학기	10~12학기
의무복무 기간	2년	2.5년	3년	3.5년	4년	4.5년	5년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조건의 이행)제1항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Q 50.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3월에 의무복무 기관으로 배치가 됩니다.

####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의무복무, 10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1) 배치, 경력 관리 - 절차 및 시기

### Q 51.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미루거나 잠시 중단할 수 없나요?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즉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조건의 이행)제2항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2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52. 의무복무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의무복무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초과하였을 때 근무 기관과의 협의 하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의무복무자는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에 대한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해야 하며, 질병휴직과 출산 휴가 신청시에도 동일합니다.

**Q 53. 의무복무 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의무복무 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별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의무복무 기간 종료 예정자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채용 여부, 채용 시 형태, 미채용 시 사유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치

### Q 54. 졸업 후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으로 배치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무복무 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인력 수요 조사, 배치 될 인력 선호기관 조사 및 시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필요 시 자문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통보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의견 조사 실시 후 2월 중 검토·결정하여 3월부터 배치 및 근무가 시작됩니다.

절차	내용	시기	비고
지자체 인력배치 계획 제출 요청	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료인력의 명단을 지자체로 통보하고 의무 복무할 기관 선정 요청	1월 초	복지부 → 지자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인력수요 조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배치 수요 조사 * 배치 시 업무, 근무일, 급여 등 근무여건 및 조건 관련 사항 조사	1월 중	지자체 → 소관기관
의료인력 선호기관 조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목록 및 근무여건 등 제시 후 대상 인력이 선호하는 기관 조사		지자체 → 의료인력
배치기관 검토 및 의견회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인력수요 및 근무여건 조사, 의료인력 선호 등을 종합하여 배치기관(안) 마련, 복지부 회신	~ 1월 말	지자체 → 복지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필요시)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배치 기관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2월 초 ~ 2월 중순	복지부
배치 결과 통보	인력수요 및 대상자 선호, 시도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기관 결정. 배치 결과를 각 지자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과 의료 인력에게 통보. * 의무복무 과정에서 각 기관과 의료인력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안내	2월 중순 ~ 2월 말	복지부 → 지자체 → 각 기관, 의료인력
배치, 근무	배치 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후 근무, 사후 관리 등	2월 말 ~ 3월 초	-

#### 관련 근거

「2024년 공공보건의료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0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1) 배치·경력 관리



**Q 55. 학교가 소재한 지역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장학생 신청 시 기재한 '희망지원지역' 내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Q 56. 의무복무 할 기관의 근무부서를 장학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장학생이 의무복무 할 기관의 근무부서는 해당 공공보건의로기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0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졸업 후 관리 - 1) 배치,경력 관리. 34쪽, <별지 6-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 - 6. 의무복무 근무부서 배치(의대생·의전원의 경우)

**Q 57. 의무복무 중 개인/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배치가 변경될 수 있나요?**

처음 배치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과 기관 간 협의 이후 시·도에 변경 요청 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같은 지역 내에서의 기관 변경은 시·도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 간 협의 이후 보건복지부로 검토 및 승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Q 58. 오지나 도서산간지역 내 위치하는 곳으로 의무복무지가 배치될 수도 있나요?**

의무복무 희망 지역으로 신청한 시·도 내에서 배치 시점 당시 공공보건의로 인력이 필요한 기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시·도 내 오지나 도서산간에 위치한 기관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검토 및 승인 하에 의무복무 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7조(면허조건이행기간)제2항



## 유예/철회



### 잠깐!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볼까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Q 59. 펠로우 수련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전문이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하며, 펠로우 수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제2항제4호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2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60. 임신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임신은 법률상 명시된 의무복무 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제2항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2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61.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발생했는데,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장학생은 조건이행 유예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발생이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해야 하고, 시·도는 이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2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62. 병역의무로 의무복무 유예중인 장학생이 11월에 제대를 합니다. 사업 지침상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날 부터 바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채용 및 신규직원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 시작일을 조절 할 수 있을까요?**

의무복무 유예 사유 해소에 따라 근무를 시작할 때에는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에 따른 부득이한 공백 기간은 인정됩니다. 단, 공백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63.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 졸업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졸업유예'를 하고 학교를 더 다니면서 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의무복무 기준은 졸업이 아니라 '면허취득' 이기 때문에 바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의사에 따른 추가 학기 등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64. 졸업예정자가 전문의 수련을 사유로 조건이행 유예 신청을 했는데 전공의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유예가 유효한가요?**

전공의 임용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 조건이행 유예 신청은 기각되며,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학생은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를 제출한 시도에 전공의 임용 시험 불합격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조건이행 유예사유 해소보고서' 제출 등 장학생이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Q 65. 의무복무 기관에서 인턴 수련과 의무복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는 없나요?**

의무복무와 전문의 수련 과정을 동시 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복무 유예 신청 후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Q 66. 면허취득 후 부득이하게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장학금과 법정이지만 반납하면 되나요?**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면허 취소가 검토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10조(행정처분)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5 경력 · 취업

### Q 67. 의무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의무복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경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Q 68. 의무복무 기관에서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게 되나요?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해당 정규직에 준하는 정원 외 별정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Q 69.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장학생과 배치기관 모두 지속 근무를 원한다면, 장학생과 기관 간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졸업 후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Q 70.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배치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시험이나 면접 등 채용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Q 71. 의무복무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정원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정규직으로 지원 가능하며, 합격하면 정규직으로서 남은 기간의 의무복무를 이행 해 주시면 됩니다.

**Q 72. 의무복무 기간 중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 기간 중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의 취업은 불가합니다.

## 6 교육 및 멘토링

### Q 73. 공중보건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공중보건장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학습관리시스템(www.edunmc.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 ■ 교육

- 집합 교육과

대상	프로그램명	일정	세부 내용
신규 장학생	공중보건장학생 입문 교육	7~8월 (1박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보건장학제도 이해</li> <li>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역사</li> <li>공공보건의료 현재와 미래</li> <li>신규 장학생 팀빌딩</li> <li>선배와의 만남</li> <li>장학증서 수여 등</li> </ul>
기존 장학생	공중보건장학생 특성화 교육	7~8월 (1박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의료 분야 탐색</li> <li>공공보건의료 이슈 토론</li> <li>진로탐색 워크숍 및 코칭</li> <li>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 논의</li> </ul>
	현장탐방	여름/겨울방학 중 (1박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지자체 행정 기관 탐방</li> <li>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탐방</li> </ul>
의무 복무자	공공의료 펠로우십 프로그램 (동문 네트워크)	1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사례 보고</li> <li>우수복무자 시상</li> <li>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li> </ul>

- 온라인 교육과정(2024년 3월 기준)

● 이러닝, ▲ 유튜브러닝, ■ 실감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정명	차시
공공 보건 의료	기본교육	정책 및 방향	● 한국 공공보건의료 이해 I	4
			● 한국 공공보건의료 이해 II	3
			● 공공보건의료 정책	3
			● 한국 공공보건의료 현실과 향후 10년의 과제	3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4
		법·제도	● 공공의료기관 의료 관련법	3
			●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3
		해외사례	● 해외보건의료 체계와 정책 사례 - 영국, 캐나다	5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	▲ [공공의료 인물탐방] 공공의료 40년 박찬병 원장 편	1
			▲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편	1
	▲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② 영주적십자병원편		1	
	▲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③ 국립공주병원편		1	
	▲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④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편		1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주축,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1		
전문 임상	응급/재난	● 재난대응의 이해와 중증도 분류	2	
		● 응급의료 체계의 이해	3	
		● 응급상황에서의 기도관리	4	
		● 대동맥 내 풍선폐쇄 소생술(REBOA)	5	
	노인성질환	● 지역사회 노인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병학	4	
		● 골다공증 이럴 때 어떻게?	5	
	임상술기	● 온라인 기본간호술기	3	
		● 정형외과 수술 전후의 관리:ERAS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5	
		● 임상술기 I - 의료진을 위한 케모포트 바늘 삽입/제거	1	
	육창 및 장루	● 육창 예방 및 관리(기본)	3	
		■ 육창 ZERO 미션 도전 : 육창 관리 시뮬레이션 훈련	-	
	신생아/산모	● 공공의료 출발점 모자의료	1	
	감염	● 개인보호구 착용의	2	
		● 감염관리 - 병원출입자	1	
		● 감염관리 - 환경관련 업무종사자	1	
		● 감염관리 - 외래출입 및 편의시설 종사자	1	
		● 감염관리 - 청결구역종사자	1	
		● 병원 감염 예방·관리 기본 과정	4	
■ VR(가상현실) 개인보호복 착용의 시뮬레이션		-		



● 이러닝, ▲ 유튜브러닝, ■ 실감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정명	차시
직무 공통	의사소통		● 공공병원 의료커뮤니케이션	3
			● 팬데믹 시대의 위기관리 소통	3
직문 전문	경영관리	인사	●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수업설계 전략	2
			● 의료분쟁 대응 및 예방	3
	사업관리	기획력	● 공공보건의료 사업기획 이해	3
			● 공공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의 실제	3
		돌봄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사례와 발전방향	3
		재택의료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 재택의료시범사업	4
		공중보건 장학사업	● 공중보건장학간호사의 지역사회보건관리	4
	원무/보험	CS	●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디자인	3
	IT	통계	● 병원 통계분석 역량 강화 입문	5
	환자관리	환자안전	● [기본] PDCA를 활용한 QI활동방법론과 활동도구 I	3
			● [기본] PDCA를 활용한 QI활동방법론과 활동도구 II	2
			● [심화] 환자안전과 환자안전방법론	3
● 환자안전의 이해			4	
	지표관리	● 의료기관 지표관리 실무 기본	4	

### ■ 멘토링

- 멘티 : 다음 연도 의무복무 배치 예정자  
\* 학년,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의무복무 배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멘토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소속 의료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 방법 : 의무복무 희망지역 등을 고려한 멘토-멘티 일 대 다 매칭
- 내용 : 지역 공공의료기관 견학,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이해, 선배와의 만남, 심층상담 등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9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재학 중 관리 - 2) 공공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Q 74.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졸업하여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 중이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교육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현직에 계시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공중보건장학생 출신의 의료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75. 멘토링은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은 모든 학년의 장학생들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공통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멘토링은 의무복무를 앞둔 장학생이 향후 근무 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의료진과 소수 정예로 매칭되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별 상담 등 기관별 자체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본인이 근무 할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소명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76. 멘토링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멘토링 수행 경험이 있고 의무복무자가 배치된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Q 77.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되는 멘토는 누구인가요?**

주로 간호부서장 등의 보직자 및 교육전담간호사가 멘토로 지정되며, 멘토링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78. 멘토링 진행 중 상대 멘토/멘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멘토링 진행 중 상대 멘토/멘티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우 공중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79. 멘토링으로 매칭된 학생이 개인사정상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해도 되나요?**

대면 방식을 권장하지만, 학생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멘토링 활동내역서 작성 시 해당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80.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 인정이 되나요?**

공중보건장학생 멘토링 참여는 학교 출석 인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멘토링 일정에 대해 멘토-멘티 간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Q 81. 교육과 멘토링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장학생은 공중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육 및 멘토링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 이수 실적이 별도 관리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불참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0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재학 중 관리 - 4) 모니터링. 22쪽, <별지 제1-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 - 1. 공중보건의료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 Q 82. 교육이나 멘토링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운임비(단, 철도, 선박, 항공, 버스에 한하며 자가용 승용차 이용은 제외함)를 지원하며, 결제 영수증 및 좌석표를 제출하시면 실비 지급 해 드립니다.

\* 지원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관련 근거** 「2024년 공중보건의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10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재학 중 관리 - 3) 멘토링 체계

## Q 83. 교육이나 멘토링 당일이 아닌 하루 전일에 출발하는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하루 전일에 출발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일자에 대한 운임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 Q 84. 교육 참여 시 식사나 숙소가 제공되나요? ?

교육 프로그램 중 식사 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교육 일정이 1박 이상인 경우에는 숙소(2인 1실)를 제공합니다.

\* 제공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 7 지역 구분

### Q 85. 장학금 지원 지역, 의무복무 지역 등 이 사업에서 말하는 '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광역자치단체'가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본 사업에서 말하는 '지역'의 기준입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Q 86. 가산점 부여 기준 '복무희망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와 관련, 부산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남도 소재 대학교를 나온 경우는 해당되나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산점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Q 87. 의무복무 희망지원 지역이 경상북도인데, 혹시 대구의료원으로도 배치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희망 근무지를 경상북도로 지원한 경우, 대구의료원으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 8 기타

### Q 88. 특례법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의하나요?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정의합니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이 들까지 포함됨).

**관련 근거**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 Q 89.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도의 증서가 수여되나요?

신규 장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증서는 증빙의 용도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사항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90. 재학 중 또는 의무복무 중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겸업을 할 수 있나요?

재학 중 개인사업자 등록 및 겸업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의료법 및 의무복무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겸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록

부록 1. 사업 주체별 역할 및 문의처

부록 2.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목록

# 부록 1. 사업 주체별 역할 및 문의처

## 사업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구성원	
중앙부처		- 사업 기획, 추진일정 및 학사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보건복지부	
사도		-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파악 - 각 대학의 추천 학생들에 대한 선발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추천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학사 관리, 의무복무 의료기관 배치 후 인력관리 등	전국 17개 시·도	
사무국		-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위원회 운영 등 위탁 수행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위원회	선발평가위원회	-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대학 및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간호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전문가 자문 위원회 (필요 시)	교육	- 제도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 -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배치	- 시·도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제도 개선	- 시범사업 추진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문의처

(2024년 3월 기준)

기관		담당과	전화	이메일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02-6362-3777	dearyunhee@nmc.or.kr
사도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14	pyhq@korea.kr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4	jjae98@korea.kr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042-270-4852	rkdalsdud12@korea.kr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23	eshan78@korea.kr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kangnh0928@gg.go.kr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kimka1120@korea.kr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aja0378@korea.kr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2645	jhsn80@korea.kr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ptha08@korea.kr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21	minarow@korea.kr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4	thsgyws7@korea.kr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055-211-5055	ju5532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12	leeio@korea.kr

## 부록 2.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목록

※ 출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3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2023.12.31. 기준)」

### 서울특별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81070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803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종합병원	19770401	대한직십자사 조직법	대한직십자사	공립(기타)	292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종합병원	19790701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시군구립)	201
송파구	경찰병원	종합병원	197102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국립	380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종합병원	19831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공립(기타)	985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종합병원	19911116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765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종합병원	1985112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립(기타)	483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종합병원	2010040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	499
중랑구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종합병원	20110309	지방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립(지방의료원)	655
양천구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종합병원	20110328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250
은평구	서울특별시서북병원	병원	19601124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414
서초구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병원	19780523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208
종로구	서울지구병원	병원	19891012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30
강북구	국립재활원	병원	199402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	264
중랑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병원	20060427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200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요양병원	요양병원	201402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공립(기타)	396
강남구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요양병원	20140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시군구립)	307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스어린이재활병원	요양병원	201603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립(시군구립)	34
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정신병원	19660505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203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병원	1962020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	200
종로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2004090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40
성동구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치과병원	20050811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
관악구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2015021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
성동구	성동재활의원	의원	2012091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시군구립)	-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의원	201904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

## 부산광역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81082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180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982063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543
사상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종합병원	199205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특수법인	475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종합병원	201004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립(기타)	225
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정신병원	19900616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공립(사·도립)	306
북구	부산시노인전문제1병원	요양병원	20050124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공립(사·도립)	200
연제구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요양병원	20071019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공립(사·도립)	188
해운대구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요양병원	20121002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공립(사·도립)	251
사하구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요양병원	20140901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공립(사·도립)	210
부산진구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의원	20220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

## 대구광역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10090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특수법인	900
서구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198302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446
달서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종합병원	199302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특수법인	459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01010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945
북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병원	201204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200
수성구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20624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244
서구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70601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대구광역시	공립(사·도립)	242
달성군	대구정신병원	정신병원	19970312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299
중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201604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2

## 인천광역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985062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303
부평구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종합병원	198302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334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종합병원	1985051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공립(기타)	122
옹진군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200109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30
미추홀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병원	201808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특수법인	137
연수구	경인권역재활병원	병원	20101008	장애인복지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공립(기타)	120
서구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요양병원	20020716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공립(시군구립)	137
계양구	인천제2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915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공립(시도립)	190

## 광주광역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8304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078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종합병원	198703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공립(기타)	549
남구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2013121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90
북구	호남권역재활병원	병원	20121115	장애인복지법	광주광역시	공립(기타)	179
광산구	광주보훈요양병원	요양병원	2022050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공립(기타)	120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요양병원	20020419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광주광역시	의료법인	257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정신병원	19980407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광주광역시	의료법인	202
광산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의원	202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
북구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200811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4

## 대전광역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8411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237
대덕구	대전보훈병원	종합병원	199710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특수법인	387
대덕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종합병원	199107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268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병원	19980121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446
서구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원	20230421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공립(사·도립)	50
유성구	대전광역시립제1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41122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공립(사·도립)	290
동구	대전광역시립제2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100727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공립(사·도립)	163
유성구	대전광역시온마음병원	정신병원	19940616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대전광역시	공립(사·도립)	175

## 울산광역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울주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요양병원	20040531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공립(사·도립)	149

##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2020062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특수법인	408

## 경기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종합병원	198604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 (지방의료원)	203
포천시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종합병원	1987042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 (지방의료원)	142
파주시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종합병원	200708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 (지방의료원)	200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198307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 (지방의료원)	201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종합병원	20000118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공립(기타)	850
고양시 일산동구	국립암센터	종합병원	20000908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공립(기타)	550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종합병원	20000226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676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003041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335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1965122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 (지방의료원)	167
안산시 상록구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종합병원	198505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380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198310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 (지방의료원)	206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201911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 (지방의료원)	299
포천시	국군포천병원	병원	19940517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100
양주시	국군양주병원	병원	19940523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342
고양시 덕양구	국군고양병원	병원	19940607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150
용인시 처인구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정신병원	19951219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238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정신병원	19970507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사·도립)	206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	201408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도교통부	국립	268
구리시	국군구리병원	병원	20170919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42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70201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립(시군구립)	210
동두천시	경기도립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요양병원	20071120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의료법인	235
여주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요양병원	20021214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사도립)	190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립노인전문 용인병원	요양병원	19991015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사도립)	204
남양주시	경기도립노인전문 남양주병원	요양병원	20100305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사도립)	244
시흥시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요양병원	20100604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사도립)	259
화성시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요양병원	198506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140
평택시	경기도립노인전문 평택병원	요양병원	20110831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사도립)	252
부천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100310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립(시군구립)	234
용인시 기흥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신병원	20200311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립(사도립)	50
고양시 덕양구	고양정신병원	정신병원	19990304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공립(시군구립)	274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원	의원	2008062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립(시군구립)	-
안성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의원	20210714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사도립)	-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종합병원	198307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148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198307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184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198307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234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종합병원	198307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177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종합병원	198307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155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982070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632
태백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종합병원	19770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247
동해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종합병원	198305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259
춘천시	국군춘천병원	병원	19940516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152
홍천군	국군홍천병원	병원	19940517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84
강릉시	국군강릉병원	병원	19940520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97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병원	20050530	장애인복지법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사도립)	148
정선군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병원	198811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165
정선군	재)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병원	20160401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30
춘천시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100122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사도립)	166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립 강릉요양병원	요양병원	20150223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사도립)	126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정신병원	1992030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	153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1997112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국립	15



## 충청북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197805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공립 (지방의료원)	583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199807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공립 (지방의료원)	294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91053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804
청주시 상당구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병원	19990903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50
충주시	충주위담통합병원	병원	20210525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공립(시군구립)	134
충주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50314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공립(시군구립)	281
청주시 서원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10212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공립(사도립)	126
단양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40607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공립(시군구립)	98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요양병원	20060329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북도	공립(시군구립)	167
영동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90204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공립(시군구립)	120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160825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공립(시군구립)	197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부설한의원	한의원	1999030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공립 (지방의료원)	4

## 충청남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1983072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 (지방의료원)	402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1983072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 (지방의료원)	272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1988052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 (지방의료원)	294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종합병원	1989032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 (지방의료원)	278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1998031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	100
논산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60111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충청남도	공립(시군구립)	117
서천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81023	서천군 서천어머니티 북지마을 운영조례	충청남도	공립(시군구립)	197
보령시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91216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립(시군구립)	160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51121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립(시군구립)	144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정신병원	1997110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국립	1,200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198310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20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198312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334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병원	201504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78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83012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국립	1,157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2015082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000622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시군구립)	171
정읍시	정읍시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060504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시군구립)	199
완주군	완주군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61109	완주군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시군구립)	78
부안군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70903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시군구립)	99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605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사도립)	195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806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사도립)	202
완주군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정신병원	19941102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사도립)	560

##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199403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278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96510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특수법인	655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병원	2002072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200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병원	20131021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공립(기타)	138
제주시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요양병원	201611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지방의료원)	197

## 전라남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199212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공립 (지방의료원)	299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00404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684
순천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198505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공립(기타)	266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199605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공립 (지방의료원)	278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정신병원	198303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	195
목포시	국립목포병원	병원	198711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	국립	204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199002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공립 (지방의료원)	199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병원	1986072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	677
함평군	국군함평병원	병원	20070516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100
장흥군	장흥통합의료병원	병원	20171016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00
영광군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040625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42
무안군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60414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 운영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32
진도군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60601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66
보성군	보성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70430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68
고흥군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70627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71
여수시	여수시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525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32
곡성군	곡성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610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46
광양시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611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74
장성군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100310	장성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55
화순군	화순군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111128	화순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86
신안군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100706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공립(기타)	80
함평군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130321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공립(시군구립)	170

## 경상북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종합병원	197807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립 (지방의료원)	298
안동시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종합병원	198108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립 (지방의료원)	246
김천시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종합병원	1966042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립 (지방의료원)	296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1994011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공립(기타)	205
영주시	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2018050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공립(기타)	150
경산시	국군대구병원	병원	19941217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100
포항시 남구	해군포항병원	병원	19940525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120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병원	20030213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81
경산시	경북권역재활병원	병원	20210118	장애인복지법	경상북도	공립(사도립)	150
안동시	경상북도립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19990429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사도립)	363
경산시	경상북도립경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10109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사도립)	299
고령군	고령군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040601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87
청도군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40707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62
봉화군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40701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143
김천시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50307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사도립)	256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60504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사도립)	166
구미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80415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243
경주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61124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240
영주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303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246
철곡군	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903	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149
상주시	상주시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1116	상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197
울진군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요양병원	20110721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88
의성군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	20160418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196
문경시	시립문경요양병원	요양병원	20071004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197
경산시	경산동의한방촌 한의원	한의원	20201119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립(시군구립)	-

## 경상남도

시군구명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개설일자	근거법령	소관부처	설립구분	병상수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종합병원	1984022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공립(지방의료원)	298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986101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895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008102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200
창원시 성산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19791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특수법인	255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종합병원	201601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606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립마산병원	병원	1946060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	국립	354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	병원	1978110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공립(기타)	99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병원	1974090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공립(기타)	91
창원시 진해구	해군해양의료원	병원	19940517	국군조직법	국방부	군병원	120
창원시 의창구	시립창원요양병원	요양병원	20021213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립(시군구립)	181
김해시	(의)환명의료재단 경상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50712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경상남도	공립(사도립)	199
양산시	경상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50713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경상남도	공립(사도립)	214
거창군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0060102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공립(시군구립)	126
통영시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70611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경상남도	공립(사도립)	272
남해군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80502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경상남도	공립(시군구립)	95
사천시	의료법인 행복한의료재단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000712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경상남도	공립(사도립)	2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시립마산요양병원	요양병원	20081030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립(시군구립)	288
의령군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20111005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공립(시군구립)	143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정신병원	1988051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국립	302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2009092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36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방병원	201001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공립(기타)	100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자주 묻는 질문(FAQ)

**발행일** 2024년 5월 31일 초판 1쇄 발행  
2024년 7월 3일 재판 1쇄 발행

**제작부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 [www.edunmc.or.kr](http://www.edunmc.or.kr)